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동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중철

전화 02-2204-4201

보도자료

2023. 5. 31.(수)

제 목 네이버 광고 순위 조작 사범 35명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(부장검사 이희찬)는 ▲**특정업체 광고를 위하여 포털사(네이버)의 검색 결과를 조작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(법인 1개 포함) 및 ▲이에 관여한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·판매업자 1명,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, 병원장 등 광고주·광고중개의뢰자 12명, 총 35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**
-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은 광고주·중개의뢰자의 의뢰를 받고,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 수행하는 '매크로 프로그램'과 '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'들을 사용하여,
 - ① 광고 의뢰업체의 상호·상품명 등이 경쟁사 제품 등과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거나, ②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정상 블로그를 가장한 광고 글을 작성한 후 해당 광고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고,
-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·판매자,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들은, 위 광고대행업자에게 각 핵심 범행 도구인 매크로 프로그램 및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을 판매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하였음
- 피고인들은 범행을 통해 **합계 약 224억 원**(온라인 광고대행업자 6개 업체 합계 약 212억 원, 매크로 개발자 약 2억 8천만 원, 계정판매업자 11개 업체 합계 약 9억 1천만 원)의 **범죄수익**을 취득
- 검찰은 데이터 마이닝 및 매크로 프로그램 분석 등 **과학적 수사기법**을 동원, **유기적으로 연계된 온라인 광고계의 범행 구조**를 확인하였음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 (총 35명)

- A(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, 43세) 등 10명 : 총 6개 업체
 - G(매크로 프로그램* 개발·판매업자, 42세)
 - H(네이버 계정 판매업자, 41세) 등 12명 : 총 11개 업체
 - T(광고주 : 화장품 업체 대표, 59세), X(광고중개의뢰자, 43세) 등 12명 : 총 5개 업체
- * 매크로 프로그램 : 키워드 검색 등 전산상으로 특정 작업을 자동·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

② 공소사실 요지

-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: 6개 업체 10명
 - '18. 3. ~ '23. 2. ① 검색 노출 조작에 필요한 매크로 프로그램과, ② 다량의 광고글 게시에 필요한 타인 명의 블로그 계정들을 구매해 두고 (범행 도구 준비)
 - 화장품제조업체, 병·의원 등 광고주로부터 검색 노출 조작 등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(광고주로부터 의뢰 수주)
 -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, 광고주가 지정하는 키워드(경쟁사 상품명 등)가 네이버에서 검색되면 광고주의 회사명·상품명 등이 연관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도록 조작하거나(연관검색어 노출 조작)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
 - 타인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블로그에 광고주 홍보글을 게시하고,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홍보글의 검색 결과 순위를 높임 (광고글 게시 및 노출 순위 조작) [정보통신망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,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

● **매크로 프로그램 개발·판매자 : 1개 업체 1명**

- '18. 11. ~ '23. 2. 작업 대상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공감 등 클릭 정보를 자동으로 네이버에 보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, 온라인 광고 대행업자들에게 판매하여, 광고주 홍보글 검색 노출 순위를 조작하는데 이를 사용하게 함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

● **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: 11개 업체 12명**

- '18. 2. ~ '22. 9. 개인계정주 또는 DB 판매업자부터 구입한 네이버 계정을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에게 판매하여, 해당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하고 블로그 광고글이 게시되도록 함 [정보통신망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

● **광고주, 광고중개의뢰자 : 5개 업체 12명**

- '18. 3. ~ '20. 11.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에게 자신들이 지정하는 키워드 조합('경쟁사 제품명'과 '자사 제품명' 등)이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의뢰하여, 지정한 키워드 조합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함 [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]

※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[별첨] 참조

2 수사 경과

- '22. 9. 22. 우리 청 사기 사건 수사 중 범죄 단서 포착
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'22. 10. ~ '23. 1. 압수물 분석, 관련자들 조사 등
- '23. 2. 16.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자 G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'23. 2. ~ 5.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사, 피의자 총 35명 인지
※ A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, 증거수집
정도, 증거인멸·도주염려 없음 등 이유로 판사 기각
- '23. 5. 31. 피의자 35명 불구속 기소(15명 구공판, 20명 구약식)

3

수사 결과

① 포털 사이트 이용 관련 유기적 · 조직적 범행 구조 규명

1. 정상적인 이용 사례

- 포털사(네이버) 이용자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계정*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검색을 하거나 블로그 글을 게시하는 등 해당 서비스를 이용

※ 포털사는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약관으로 계정 판매·대여 등을 금지하고, 부정 이용을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

< 네이버의 이용약관 중 >

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, 양도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.

< 네이버의 계정 운영정책 중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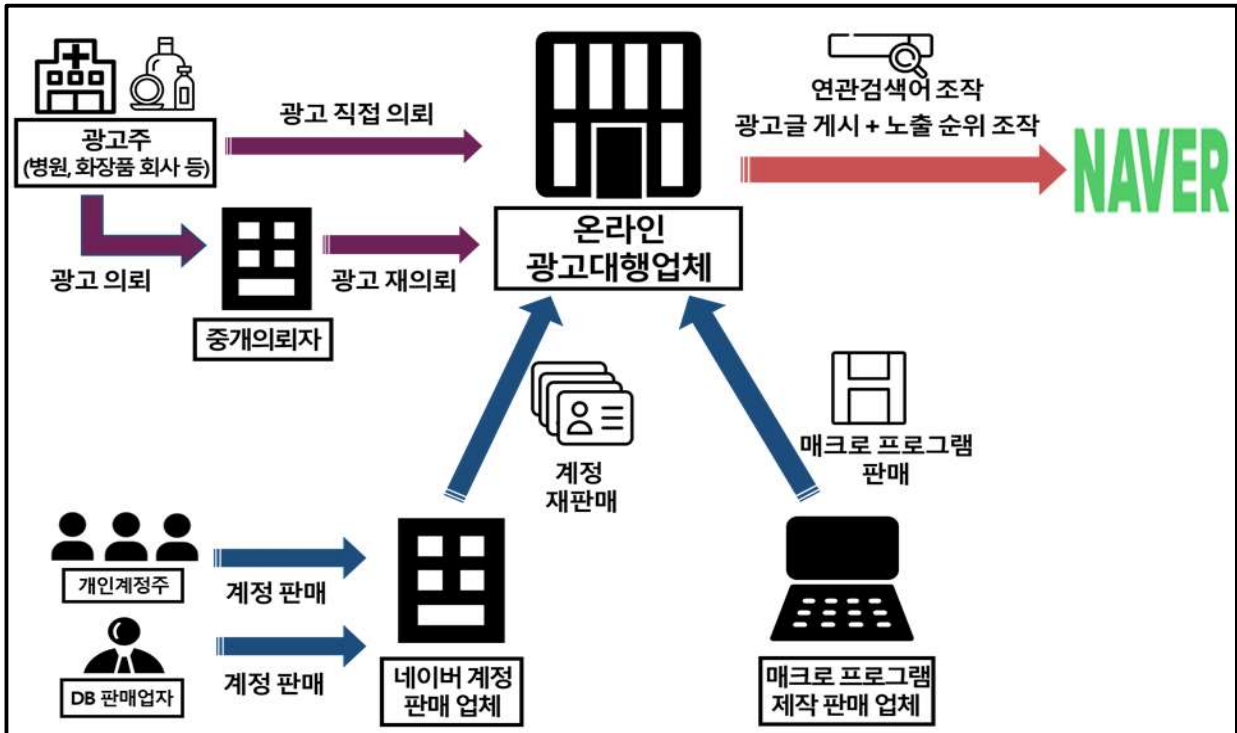
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본인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마치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.

- [연관검색어 기능]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특정 검색어(㉠)와 다른 검색어(㉡)를 순차 검색하는 경우, 두 검색어(㉠, ㉡)를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로 묶어 둘 중 어느 하나가 검색될 경우 다른 검색어가 연관검색어로 화면에 현출되는 기능
- [블로그 상단 노출 기능]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특정 블로그 글에 공감 · 스크랩 · 북마크 등 기능을 활용해 관심을 표할 경우 그 빈도에 따라 검색 시 해당 블로그 글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기능
 - ☞ 두 기능 모두 ▲본인 계정을 이용한 ▲불특정다수 이용자들의 ▲정상적 대량 접속을 바탕으로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자동 제공되는 서비스임

2. 확인된 범행 구조

- 검찰은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식에서 벗어나 타인 계정 매매 및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을 매개로,
 - 온라인 광고대행업체, 계정 판매업체,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·판매업체, 광고 중개의뢰자, 광고주 등이 조직적으로 공생해 온 범행 구조를 확인하였음

< 범행 구조 도해 >



① [광고 의뢰] 병·의원, 화장품제조업체 등 광고주는 자사 홍보를 위해 甲회사 등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에 직접 또는 중개자*를 통하여 인위적인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등을 의뢰

* 광고중개의뢰자는 광고주로부터 검색 노출 조작 등을 의뢰받아 이를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에 재의뢰하는 구조

② [매크로 프로그램 매매]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사전에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·판매업체로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운용

- 매크로 프로그램은, ①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, ② 블로그

광고글 게시 순위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 등이 사용되었음

< 피고인 G가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메인 화면 캡처 >

The screenshot shows a window titled '블로그 포스팅 작업 입력' (Blog Posting Task Input). It contains several input fields and controls:

- 주소** (Address): An empty text box.
- 검색 키워드(단어 한개만입력)** (Search Keyword): A text box containing '테스트' (Test).
- 검색 접속** (Search Access): A numeric input box with '10' and the unit '회/0회남음' (times/0 times remaining).
- 덧글 작업** (Reply Task): A numeric input box with '10' and the unit '개/0개남음' (pieces/0 pieces remaining).
- 공감 작업** (Like Task): A numeric input box with '10' and the unit '개/0개남음' (pieces/0 pieces remaining).
- 스크랩** (Scrap): A numeric input box with '0' and the unit '회/0회남음' (times/0 times remaining).
- 북마크** (Bookmark): A numeric input box with '0' and the unit '회/0회남음' (times/0 times remaining).
- 체류시간** (Residence Time): A dropdown menu showing '1m ~ 1m30s (검색+0)'.
- 검색추가자감** (Search Add Count): A label '0개'.
- 체류시간 설명** (Residence Time Description): A blue hyperlink.
- 작업 딜레이 (1회작업후 다음작업까지 대기)** (Task Delay): A range of '300 초 ~ 500 초 (기본 300~500)' (300 seconds ~ 500 seconds (default 300~500)).
- 작업 등록** (Task Register): A button.
- 딜레이를 2분(120초) 이하로 할경우 입력한작업보다 많이 들어갈수있습니다.** (Delay can be less than 2 minutes (120 seconds), in which case more tasks can be entered than specified).

- 주소 : 작업 대상 블로그 게시글의 URL 주소를 입력
- 검색 키워드 : 네이버 검색창에 반복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
- 검색 접속, 덧글 작업, 공감 작업, 스크랩 : 입력한 횟수만큼 작업 반복 수행

③ [계정 매매] DB 판매업자 또는 개인 계정주는 계정 판매업체에 타인의 네이버 계정 등 정보를 판매

- 계정 판매업체는 위와 같이 구매한 타인 계정 등 정보를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에 재판매

-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블로그 광고글을 효과적으로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계정 판매업체로부터 타인 계정 등을 구매하여 이용
 - ▶ 계정을 이용한 블로그 운용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상단 노출에 보다 유리하므로 활성화 정도가 높은 계정을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

< 압수물 :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압수한 다량의 휴대폰 등 >



※ 계정 판매업자는 개인계정주로부터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데 이때 IP를 변경하면서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

④ [네이버 검색 조작 ① - 연관검색어 조작]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, 광고주가 지정하는 키워드(경쟁사 상품명 등)가 네이버에 검색되면 광고주의 상품명 등이 연관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도록 조작

⑤ [네이버 검색 조작 ② - 블로그 게시 및 순위 조작]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는 타인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블로그에 광고주 홍보글을 게시 하고,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홍보글의 검색 순위를 높임

- 광고주는 블로그 게시글을 가장한 홍보 문구 등 광고 내용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와 미리 상의하여 작성

-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타인 계정 이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VPN*을 사용하여 사무실 IP를 변경하며 블로그에 위 광고글을 게시

* VPN은 사용자 IP주소를 숨겨 온라인 익명성을 보장하는 ‘가상사설망’ 서비스
: 네이버는 접속 IP 등을 분석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검출하고 있으므로
온라인 광고대행업체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VPN을 사용

② 온라인 광고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피해 확인


- 기만적인 광고 수법을 동원한 유기적·조직적 범행구조를 통해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의 피해를 초래한 사실 확인
- 포털사의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 등 방해 뿐 아니라, 해당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건전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한편, 광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

③ 범죄수익 규모 확인

- 본건 범행을 통해 ①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는 6개 업체 합계 약 21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(각 업체별 약 5억~91억 원), ②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·판매자는 1개 업체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, ③ 네이버 계정 판매업체는 11개 업체 합계 약 9억 1천만 원(각 업체별* 약 2,800만 원 ~ 4억 3천만 원)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

* 구공판 대상 업체 기준

4 향후 계획

- 검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인터넷 사용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 등을 저해하는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

[별첨]

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

●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: A[남, 43세, (주)甲회사의 대표] 등 10명

순번	피고인	직업(범행사)	공소사실 요지 (죄명)	처분
1	A (남, 43세)	(주)甲회사 대표	- '18.10.~'22.11. 타인의 네이버 계정들을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 후 블로그에 13,845개의 광고글 게시 [정보통신망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구공판 구약식
2	A1 (남, 37세)	(주)甲회사 과장	- '20.11.~'22.12.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광고글에 약 27만건의 허위 클릭 전송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
3	A2 (여, 29세)	(주)甲회사 팀장	- '18.3.~'20.12.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6,355회에 걸쳐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키워드가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함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
4	A3 (여, 28세)	(주)甲회사 팀장	- 양벌규정 [정보통신망법위반]	
5	(주)甲회사	법인	- 양벌규정 [정보통신망법위반]	
6	B (남, 42세)	(주)乙회사 대표	- '23.2. 타인의 네이버 계정들을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 후 블로그에 813개의 광고글을 게시하고, '21.10.~'23.2.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광고글에 약 745만건의 허위 클릭 전송 [정통망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,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구공판
7	C (남, 35세)	(주)丙회사 대표	- '22.4.~'23.2. 타인의 네이버 계정들을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 후 블로그에 1,220개의 광고글을 게시하고, '20.3.~'23.2.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광고글에 약 781만건의 허위 클릭 전송 [정통망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,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구공판
8	D (남, 42세)	(주)丁회사 대표	- '23.2. 타인의 네이버 계정들을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 후 네이버 블로그에 1,198개의 광고글을 게시하고, '18.11.~'23.2.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광고글에 약 284만건의 허위 클릭 전송 [정통망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,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구공판
9	E (남, 41세)	(주)戊회사 대표	- '23.2. 타인의 네이버 계정들을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 후 네이버 블로그에 874개의 광고글을 게시하고, '18.12.~'23.2.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광고글에 약 232만건의 허위 클릭 전송 [정통망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,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구공판
10	F (남, 33세)	근업체 운영	- '23.2. 타인의 네이버 계정들을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 후 네이버 블로그에 836개의 광고글을 게시하고, '20.6.~'23.2.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광고글에 약 164만건의 허위 클릭 전송 [정통망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,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구공판

●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·판매자 : G(남, 42세, 프로그래머)

순번	피고인	직업(범행사)	공소사실 요지	처분
11	G (남, 42세)	프로그래머	-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공감, 스크랩 등 클릭 정보를 자동으로 네이버에 보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광고 대행업자 A~F에게 제공하여, A~F가 '18.11.~'23.2. 합계 약 2,235만건의 허위클릭을 전송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구공판

●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: H(남, 41세, ㄱ업체 운영) 등 12명 및 위 C, E

순번	피고인	직업(범행사)	공소사실 요지	처분	
12	H (남, 41세)	ㄱ업체 운영	- '19.7.~'22.9. A에게 96회에 걸쳐 433,572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하여 A가 위와 같이 네이버에 접속하여 광고글 게시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구공판	
13	I (남, 40세)				
14	J (남, 42세)	ㄴ업체 운영	- '19.5.~'22.9. A에게 60회에 걸쳐 206,17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15	K (남, 36세)	ㄷ업체 운영	- '19.5.~'22.5. A에게 33회에 걸쳐 133,63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-	E (남, 41세)	(주)戊회사 대표	- '19.9.~'22.6. A에게 20회에 걸쳐 78,10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16	L (남, 32세)	(주)ㄹ회사 대표	- '18.2.~'19.2. A에게 16회에 걸쳐 55,17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17	M (남, 33세)	ㄴ업체 운영	- '19.11.~'21.1. A에게 10회에 걸쳐 32,16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18	N (남, 25세)	(주)ㅂ회사 대표	- '19.4.~'19.7. A에게 12회에 걸쳐 28,71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-	C (남, 35세)	(주)丙회사 대표	- '20.3.~'20.7. A에게 3회에 걸쳐 9,60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19	O (남, 31세)	ㄷ업체 운영	- '21.1. A에게 2회에 걸쳐 8,80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구약식
20	P (남, 36세)	ㅇ업체 운영	- '19.3.~'19.9. A에게 15회에 걸쳐 7,755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21	Q (남, 30세)	ㅈ업체 운영	- '19.12.~'20.12. A에게 7회에 걸쳐 4,07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22	R (남, 36세)	ㅊ업체 운영	- '19.9.~'20.2. A에게 17회에 걸쳐 1,87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23	S (남, 27세)	(주)ㅋ회사 대표	- '21.9.~'22.2. A에게 12회에 걸쳐 300,000원을 받고 네이버 계정을 판매 [정통방법위반(침해등), 업무방해]		

● 광고주, 광고중개의뢰자 : T[남, 59세, (주)㉔회사 대표] 등 12명

순번	피고인	직업(범행사)	공소사실 요지	처분
24	T (남, 59세)	(주)㉔회사 대표	- '19.2.~'20.3. (주)㉔회사 직원들을 통해 A에게, 네이버에 경쟁사 제품명을 검색하면 자사 제품명이 연관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도록 하는 등의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여, A가 9,293회에 걸쳐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구공판
25	U (남, 47세)	㉕병원 원장	- '18.8.~'18.11. A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여, A가 758회에 걸쳐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[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]	구약식
26	V (남, 46세)	㉖병원 원장	- '18.3. A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여, A가 50회에 걸쳐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
27	V1 (여, 47세)	㉖병원 직원		
28	V2 (남, 29세)	㉖병원 직원		
29	W (남, 47세)	㉗병원 부원장		
30	W1 (여, 47세)	㉗병원 직원	- '20.1.~'20.11. A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여, A가 2,295회에 걸쳐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[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]	
31	W1 (여, 37세)	㉗병원 직원		
32	X (여, 43세)	(주)㉔회사 직원		
33	X1 (남, 39세)	(주)㉔회사 직원	- '19.2.~'20.3 (주)㉔회사로부터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받아 A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재의뢰하여, A가 9,293회에 걸쳐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	
34	X2 (여, 40세)	(주)㉔회사 직원		
35	X3 (여, 32세)	(주)㉔회사 직원		- '19.5.~'20.2 광고주로부터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받아 A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재의뢰하여, A가 2,086회에 걸쳐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